

『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』

# 審 査 報 告 書

2005. 2. 25.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 경과

-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- 제출 및 회부일자
  - 제출일자 : 2005년 2월 2일
  - 회부일자 : 2005년 2월 2일
- 상정일자 :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  - 2005. 2. 21 :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의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)

- 제안 이유
  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지급기준을 참작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험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.

## □ 주요 내용

-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감시수당을 상향 조정
  - 공휴일 30,000원 → 공휴일(오전) 40,000원  
공휴일(전일) 50,000원
  - 평 일 15,000원 → 평 일 20,000원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(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)

- 본 조례안은 현행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무원 시험 등 시험운영관리에 종사하는 시험관리관의 수당이 중앙인사 위원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하려는 것으로서,
- 그 동안 우리 도는 같은 근무여건임에도 중앙인사위원회나 타시·도보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 등에서 약 1만원정도 불 이익을 받는 등 적잖은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
-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요인을 없애면서 시험운영의 효율성

제고와 시험수당 현실화 등을 위해 수당을 현행 공휴일 3만원에서 4만원(오전) 또는 5만원(전일)으로, 평일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- 다만, 2004년도 시험관리관 종사자 연누계인원과 예산집행액, 그리고 조례개정시 연간 추가소요예산은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

※ 타시·도별 시험 감독수당 지급 기준액

시 도 별	휴일오전	평 일
중앙인사위	40,000원	20,000원
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진 경남 전남 경북	40,000원	20,000원
부산 충청 경북 제주	30,000원	15,000원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 략”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※ 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년 2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이유

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감시수당을 중앙인사위원회 등의 지급기준을 참작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험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감시수당을 상향 조정
  - 공휴일 30,000원 ⇒ 공휴일(오전) 40,000원, 공휴일(전일) 50,000원
  - 평 일 15,000원 ⇒ 평 일 20,000원

#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#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#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”로 한다.

[별표] 시험수당지급기준표중 감시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수당별	구 분	수 당 액	비 고
감시수당	공휴일(전일)	50,000원	
	공휴일(오전)	40,000원	
	평 일	20,000원	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[별표]

### 시험수당지급기준표

현행				개정안		
수당별	구분	금액	비고	구분	금액	비고
출제수당	(생략)			(현행과 같음)		
채점수당	(생략)			(현행과 같음)		
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	(생략)			(현행과 같음)		
문제편집 수당	(생략)			(현행과 같음)		
문제선정 심의수당	(생략)			(현행과 같음)		
감사수당	공휴일	30,000원		공휴일(전일)	50,000원	
				공휴일(오전)	40,000원	
	평일	15,000원		평일	20,000원	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공무원임용령

제48조(시험위원 등)①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법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관한 출제·채점·면접시험·실기시험·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
1.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.
2.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.
3.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.

⑤시험위원·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·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.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

제16조 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